

2025학년도 2학기 「교육봉사활동」 이수 안내문

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양성과정)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「교육봉사활동」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

1 대상

- 1) 학부생 :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
- 2) 교육대학원생 : 양성과정 이수자

2 개설강좌

교과목명	분반	교과목번호	학점	개설기관	비 고
교육봉사활동	075	XA4000347	2	교육학과	교육봉사시간 60시간

3 교육봉사 활동방법

- 1) 교육봉사활동의 대상
 -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·초·중·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**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**
- 2)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
 -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 후 교사, 초등 돌봄 교실
 - 자유학기제(학습지도 부분) 관련활동,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, 재능기부
 - ※ 단순노무, 사무보조, 행사진행, 인솔, 감독, 도서대출·반납,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
- 3)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
 -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 -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.

4)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

-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(유치원·초·중·고등학교) ※ **어린이집 불가**
-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
 -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(인가증, 허가증, 등록증, 신고증 중 1가지, 고유번호증)를 교직부로 제출
 - ※ 지방자치단체,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
-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 - ※ (가능 기관의 예) 대학에서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(진로체험 프로그램, 영재캠프 등), 병원학교(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)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등
 - ※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단, 교육봉사활동의 대상, 활동내용, 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(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대학에 한함)

5)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

-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(**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**)
- ※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

6)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

-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일(3시간 이상)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**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**
-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

7) 기타 유의사항

- 2020~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
- ※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
- 교육부 교·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의 경우, **2022학년도 활동 내역만 인정**

8)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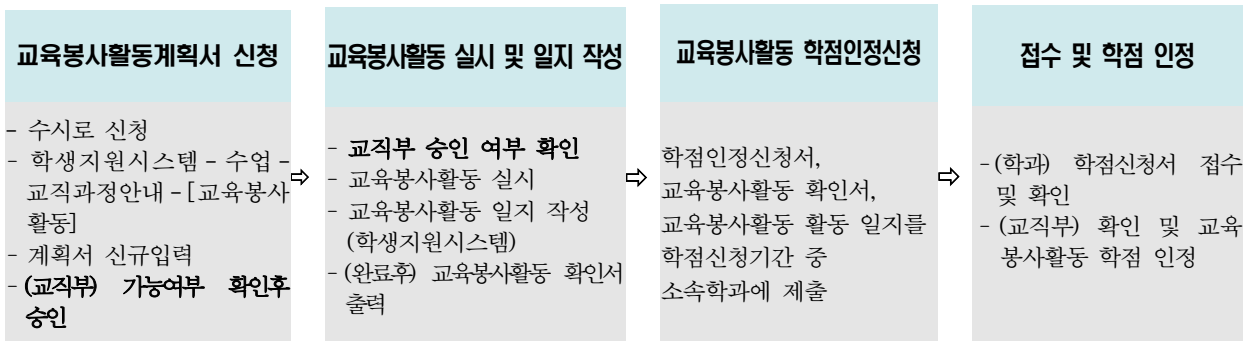
- 교육봉사활동 사후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, 일정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

4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

교과목명	개설기관	학점 취득 방법		
		순서 및 내용	주체	
교육봉사활동 (XA4000347)	교육학과	①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학생지원시스템-수업-교직과정안내-교육봉사활동] 계획서 입력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및 봉사내용 확인 후 승인 	학생 교직부
		②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봉사활동 일지 입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직부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(재학기간 중) 교육봉사활동 일지 입력 	학생
		③교육봉사활동 (XA4000347) 수강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봉사시간(60시간)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 신청 	학생
		④교육봉사활동 확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※ 교육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	학생
		⑤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, 교육봉사활동확인서, 봉사활동일지(해당자)를 소속학과에 제출 - 기한 :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7일전 - 제출서류 : 학점인정신청서, 확인서, 봉사활동 일지(해당자) ※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에 일지가 없을시 학생지원시스템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	학생
		⑥대학(학과)별 학점인정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(학과)별로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학점 인정 신청 - 기한 :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3일전 - 제출서류 : 학점인정신청서, 확인서, 봉사활동 일지(해당자), 학적변동내역 ※ 재학기간 중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 	대학 (학과)
		⑦학점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강신청자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, 봉사활동일지, 학점인정신청서 확인 후 학점 부여 	교직부

5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처리 절차

1)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절차



※ 교육봉사활동(XA4000347) 수강신청 시기 :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할 수 있는 학기 또는 완료 이후 졸업학기 까지

2)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

- 신청기간 : 2025. 12. 1.(월) ~ 12. 5.(금)
- 신청방법 : [학생지원시스템-수업-교직과정안내-교육봉사활동]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 신청
- 제출서류 :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, 교육봉사활동확인서, 교육봉사활동일지(해당자)
- 제출장소 : 소속학과
- 학점 개별 열람 : 2026. 1. 2.(금)부터

2025. 9.

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